

檢 討 報 告

□ 制定背景

- 계룡시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24조 제2항,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위탁함에 있어 그 운영과 비용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.

□ 主要内容

- 공립보육시설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).
- 보육시설 관장 및 수행업무를 정함(안 제3조).
-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 내지 제5조).
-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및 정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 내지 제7조).
-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.
- 지원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).

□ 檢討意見

-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시설을 국·공립으로 설치·운영하려는 여성부의 시책방향에 따라 계룡시에도 최소 1개의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,
- 조례안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, 운영방법에는 계룡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, 계룡시에 현재 공립보육시설부지의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, 향후 위탁 공모함에 있어 공립보육시설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민간인에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,
-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